

기획관리실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나) 검토내역 및 의견

1.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다. 검토내역 및 의견

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97예산(안)	구성비 (%)	'96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 감	%
합 계	51,883	100.0	51,608	100.0	275	0.5
인 건 비	20,143	38.8	17,569	35.4	2,573	14.6
물 건 비	9,506	18.3	9,014	14.4	491	5.4
이 전 경 비	2,204	4.2	1,768	6.6	435	24.6
자 본 지 출	8,130	15.7	14,553	22.3	△6,423	△44.1
용 자 및 출 자	-	-	-	-	-	-
보 전 재 원	26	0.1	30	3.9	△4	△13.3
내 부 거 래	4,168	8.0	-	-	4,168	-
예비비 및 기타	7,703	14.8	8,671	17.5	△967	△11.2

○ '97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당초 예산액 516억8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518억8천3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내역 및 의견

19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액 516억8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518억 8천3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946억6천2백만원에 대하여 7.4%의 규모를 점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	201억4천3백만원(14.6% 증)
· 물건비	95억6백만원(5.4% 증)
· 이전경비	22억4백만원(24.6% 증)
· 자본지출	81억3천만원(44.1% 감)
· 보전재원	2천6백만원(13.3% 감)
· 내부거래	41억6천8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77억3백만원(11.2% 감)으로

이를 세항별, 사항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획관리에 있어

○ 경상예산

· 일용인부임(p45)	1천7백만원
· 관서운영비(p46)	2억4천6백만원
· 도정보고서유인등일반수용비(p46)	9천3백만원
· 각종위원회참석수당(p48)	1억1천만원
· 주요업무계획서작성등급량비(p48)	1천4백만원
· 행정자료실등록대장작성및분류작업(p48)	1백만원
· 도정기호기운영자료수집등국내여비(p49)	3천3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p48) 8백만원
 - └ 기획관리실장 5백만원
 - └ 기획관 3백만원
-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등일반업무추진비(p49) 2천7백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p49) 1천3백만원
-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백만원
 - └ 기획관리실장 5백만원
 - └ 기획관 3백만원
-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등시책추진특수활동비(p51) 4억2천3백만원
- 21세기위원회세미나발표회보상등보상금(p51) 5천5백만원
- 행정자료실도서구입등(p52) 1천3백만원으로
- 사업예산
 -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보상금(p52) 3천만원
 - 충북개발연구원출연기금(p52) 8억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기금(p52) 1억1천4백만원
 - 충청북도 의정동우회지원(p52) 2천만원
 - 청주국제공항기념축제행사(p52) 2억원
 -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지원(p53) 4억원
 - 전자복사기(대체)구입비등(p53) 9백만원으로

충북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할때 개발연구원에 출연하는 8억원이 부담이 안되는지 여부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억1천만원과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 지원금 4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의 소상한 설명이 요구됨.

둘째, 국제교류에 있어

○ 경상예산

- 주요업무보고서작성등일반수용비(p53) 2천8백만원

- 아나시현직원숙소관리비등공공요금및제세 (p54) 7백만원
- 국제교류및통상업무추진급량비(p54) 3백만원
- 국제교류추진등국내여비(p54) 1천만원
- '97명예대사대회참석체재비등외빈초청여비 (p55~56) 1억5천6백만원
- 자매결연체결단(민간인)여비보상등(p57) 1억1천1백만원
- 흑룡강성직원숙소비치물품구입 2십만원

○ 사업예산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p58) 4천1백만원
- 일본아나시현관광물산개최보조(청주상의)(p58) 2천만원
- 흑룡강성직원숙소전화가입비및TV구입비(p58) 1백만원으로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상금중 자매결연사전교류단, 자매결연체결단, 충청북도 명예대사 활동보상에 있어서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셋째, 예산운영에 있어

○ 경상예산

- 기본급(p59~68) 177억9천6백만원
- 도정업무추진관서운영비(p69) 1억4천만원
-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심의및부속서류등 일반수용비(P69) 9천2백만원
- 예산편성및조정작업등급량비(p70) 4천8백만원
 - * 을지연습및전시대비훈력급식 2천5백만원
- 지역현안사업추진등국내여비(p71) 2억7천8백만원
 - * 도정업무추진 2억5천만원
- 지방재정운영추진일반업무추진비.(p71) 5백만원
- 직책급업무추진비(p71) 2억6천1백만원
- 직급보조비(p71) 16억1천3백만원

- 예산담당공무원정액활동비(p71) 1천9백만원
- 지역현안사업등시책추진특수활동비(p71) 2천8백만원
- 정액급식비(972명)(p71) 9억3천2백만원
- 업무추진교통비(p72) 11억6천8백만원
- 명절휴가비(p72) 8억8천7백만원
- 체력단련비(p72) 22억1천7백만원
- 도정업무추진민간인보상금(p72) 5천만원
- 칼라프린터기1대구입(p72) 1백만원
- 사업예산으로는
 - 도정업무추진임의보조(p73) 8억원
 - 지방행정우수시군(인센티브)(p73) 6억원
 - 다기능사무기기대체취득외(p73) 7백만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p73) 1억6천8백만원
- 독립대학운영으로는
 - 옥천공업전문대학시설비(p73) 47억2천8백만원
 - * 국고보조 30억원
- 지역개발으로는
 - 소규모주민숙원사업(p73) 20억원
- 예비비(p74) 77억3백만원으로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등이 인상된 데서 기인되며, 기타 도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정업무 추진 민간인 보상금 5천만원, 도정업무추진 임의보조 8억원, 지방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원에 있어서는 집행계획등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넷째,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 경상예산으로

- 민자유치홍보책자재외수용비(p75) 5백만원
- 의료원결산및정상화업무추진외급량비(p75) 2백만원
- 지방공기업시군업무지도외국내여비(p76) 5백만원
- 지방공기업예산담당공무원정액활동비(p76) 8백만원

○ 사업예산으로

- 청주의료원과산분원시설보강(p76) 3억원
- 모사전송기1대구입(p76) 2백만원

○ 지방채상환으로

- 의료장비차관이자(충주의료원)OECF(p77) 2백만원
- 충주의료원OECF(차관상환)(P77) 2천6백만원으로

필수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청주의료원 과산분원 시설보강 3억원에 대해서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 경상예산으로

- 자치법규추록발간등일반수용비(P77) 4천3백만원
- 한국법률정보사용료(P78) 1천2백만원
- 행정심판위원출석수당등운영수당(P78) 1천2백만원
- 법제심사·송무업무추진급식비(P79) 3백만원
- 법제업무자료수집등국내여비(P79) 1천만원
- 행정심판위원회운영일반업무추진비(P79) 2백만원
- 법무담당공무원정액활동비(P79) 6백만원
- 행정심판위원회현지확인여비보상금(P79) 2백만원
- 프린터기대체취득등사무기기구입(P80) 7백만원

○ 사업예산으로

- 다기능사무기기1대구입 1백만원으로

필수 사업비만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여섯째,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 경상예산으로

- 일용인부임(P81) 9백만원
- 전산개발연찬회보고서유인등수용비(p81) 1천3백만원
- 천리안사용료등공공요금및제세(p81~82) 4천6백만원
- 전산개발업무추진등급량비(p83) 9백만원
- 국산주전산기(Ticom)등임차료(p83) 1억2천4백만원
- 행망용(주민, 부동산, 자동차)주전산기
유지보수료등시설장비유지비(p83~84) 1억8천6백만원
- 행정전산망운영점검지도등국내여비(p84) 2천9백만원
- 지방행정정보통신망장비구입등(p85) 5천8백만원

○ 사업예산으로

- 멀티미디어산업단지조성계획용역비(p85) 4천만원으로

필수 사업비만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하겠으며,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활용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일곱째, 통계관리에 있어

- 도정총람발간등수용비(p87) 4천1백만원
- 통계협회비등(p87) 1백만원
- 통계업무추진급료비(p87) 2백만원
- 사업체기초통계실지조사(p87) 4백만원
- 통계업무추진용PC구입등 2백만원으로

필수 사업비만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도정의 기본계획 운영의 필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1.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백만원)

과 목 별	'97예산(안)	'96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125,240	129,218	△ 3,987	△ 3.1	
□ 사업수익	17,783	15,863	1,920	12.1	
○ 용자금이자수입	14,753	13,843	910	6.6	'87~'96기금융자금 이자
○ 예금이자수입	3,000	2,000	1,000	50.0	예금이자
○ 채무면제수입	30	20	10	50.0	시효소멸채무면제 이익('81공채원금, '86공채이자)
□ 자본적수입	74,457	100,855	△ 26,398	△ 26.2	
○ 용자금회수	14,457	58,855	△ 44,398	△ 75.4	'87~'94용자금회수 원금
○ 지방채매출	60,000	41,000	19,000	46.3	'97 지역개발공채 발행
○ 일반회계출연금	-	1,000	△ 1,000	△ 100	
□ 이월금	33,000	12,500	20,500	164.0	'96집행잔액

나. 세출예산안

(단위:백만원)

과 목 별	'97예산(안)	'96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125,240	129,218	△ 3,978	△ 3.1	
□ 사업비용	10,383	8,138	2,245	27.6	
○ 기금관리비	46	45	1	2.2	인건비 및 용역비
○ 지급이자	9,978	7,828	2,150	27.5	'92 공채상환이자
○ 선급이자	148	101	47	46.5	공채 월말기준 발행에 따른 선이자
○ 공채인쇄	108	60	48	80.0	'98 공채인쇄비
○ 예비비	103	104	△ 1	△ 0.9	
□ 자본적비용	114,857	121,080	△ 6,223	△ 5.1	
○ 기금용자금	78,000	51,716	26,284	50.8	상수도(1건:충주)3000 도로사업(옥천동부) 1,000 경영수익사업기타 (4건)7,014 용자예비자원 66,986
○ 지방채상환금	29,501	23,146	6,355	27.5	'92 공채매출 상환금
○ 예비비	7,356	46,218	△ 38,862	△ 84.1	

다. 검토내역 및 의견

1) 세입(p89)

1997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 '87~'96기금융자금이자	147억5천3백만원
· '97년도예금이자발생예상액	30억원
· 과목존치예산액	1백만원
· '87~'94용자금회수원금	144억5천7백만원
· '97공채발행예상액	600억원
· 시효소멸채무면제수입('81년도공채원금및 '86공채이자)	3천만원
· 이월금	330억원

2) 세출(p91)

1997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및용역비	4천6백만원
· '92년발행공채이자상환	99억7천8백만원
· 공채선급이자(600억원매출예상)	1억4천8백만원
· '97공채인쇄비(900,000매×120원)	1억8백만원
· '97중도상환이자	1백만원
· 사업예산예비비	1억원
· 상수도사업	30억원
· 경영수익사업및기타	740억원
· '92년도공채매출상환원금	295억원
· 자본예산예비비	73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용자금에 대한 잔액과 용자금회수원금 공채발행 예상액등
재원확보가 가능한 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졌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사업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채발행원금 및 이자상
환등 법적,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